#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3-172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7. 26.

#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6,25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4.27)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2.5.13.~'22.11.29.)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2. 10월 기준 8,297건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보관하고 있다.

####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일	건수(명)

<sup>\*</sup> 해당 개인정보파일은 학적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편집·작성한 것으로, '20. 2. 25. 기준 '20년 1학기 재학생의 정보를 '20.2.27. 최초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 및 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 ※ 학적관리시스템의 학적정보는 피심인의「

」에 따라 준영구 보관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 1) 유출규모 및 항목

2020년 1학기 재학생 8,297명의 학번, 학과, 학년, 이름, 학생구분, 입학 구분, 입학정원 구분, 입학전형, 자택전화, 지역, 모바일, 장학내역, 학적 상태, 주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수강신청 학점, 총 이수 학점, 입학 일자, 국적 등이 유출되었다.

# 2) 유출인지 및 대응

일시	주요 내용			
	안랩社의 직원이 구글 검색 시 해당 엑셀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2022.4.22.	유출되고 있음을 이메일로 제보 유 <b>출 사실을 인지</b> 하여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삭제 조치			
	홈페이지 내 게시글에 업로드된 첨부파일 미리보기 기능 삭제			
0000 4 07	개인정보 <b>유출 신고</b> 및 홈페이지에 <b>유출 사실 공지</b>			
2022.4.27.	공지사항 첨부파일에 엑셀 업로드 불가 처리(PDF만 업로드 가능)			
2022.4.28.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22.4.29.~5.25.,	정보주체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b>유출 사실 통지</b> , 이메일 미수신			
5.28.~9.30.	정보주체에게 유선전화, 등기우편 등을 통해 통지			
2022.5.2 이후	전직원 개인정보보유파일 관리실태 긴급점검 및 조치 등			

# 3) 유출경위

피심인이 홈페이지 장학공지 게시판에 2022-1학기 결과 안내」게시글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엑셀)을 업로드(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선발결과 시트 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트('')는 [숨기기] 처리되어 있어서 업로드 당시에 담당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숨겨진 정보가 홈페이지 게시판의 '첨부파일 미리보기'기능을 통해 드러났다.

###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3. 10.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1억 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 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억 원)의 35%인 3,500만 원을 감경한다.

#### < 1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 < 세부평가 기준표 >

_	부과점수 3점 3점						
고려사항 비중			3점	2점	1점		
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0.2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접근통제 2. 접근권한의 관리	3점 또는 2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전	암호화	0.2	이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 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성 확 보 조 치	보안 프로그램	0.2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 영하지 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물리적 안전	3점 또는 2점에 해당		
피해 방지 후속 조치 등		0.2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조치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		

#### 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점에 해당하여 1차 조정된 금액(6,500만 원)의 50%인 3,250만 원을 감경한다.

#### < 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고려사항 비중		3점	2점	1점
위반기간	0.2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큰 경우(1호 ISMS)

<sup>\*</sup> 피심인은 ISMS 인증을 받음('23.6.7, 인증번호 ISMS-KISA-2023-068)

####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첨부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엑셀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3,250만 원)의 50%인 1,625만 원을 감경한다.

※ (추가 고려사항) 정보주체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정보 주체에게 배상\*한 점 등

\* 제공, 원/1인(명, 기준)

# 마.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차, 2차,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통하여 1,6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	최종 과징금
1억원	6,500만 원	3,250만 원	1,625만 원	
일반 위반행위 ※ 10만 건 미만	1차 산정점수 1.6점 ⇒ 35%(3,500만 원) 감경	2차 산정점수 1점 ⇒ 50%(3,250만 원) 감경	2차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 ⇒ 50%(1,625만 원) 감경	1,625만원

#### 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023년 7월 26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